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금	용	위	원	회

2025. 4.

정 무 위 원 회

목 차

I .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II . 심사결과	1
II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IV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3
V . 대체토론의 요지	38
VI .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38
VII . 찬반토론의 요지	38
VIII . 심사결과	39
IX . 소수의견의 요지	39
X . 부대의견	39
※ 첨부	41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4.
정무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출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4월 21일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4. 2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4. 28.)

(상정 · 심사)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4. 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 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총 4개 사업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산현액 대비 3,865억원(9.2%)이 증액 편성(4조 1,838억원→4조 5,703억원) 되었음.

<2025년도 제1회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 세입예산안	896	1,011	1,011	-	-
○ 일반회계	896	1,011	1,011	-	-
□ 세출예산안	40,030	41,838	45,703	3,865	9.2
○ 일반회계	40,030	41,838	45,703	3,865	9.2

(자료: 금융위원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 산업은행 출자사업 공통(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 2025년 4월 8일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현행 법정자본금 30조원¹⁾ 대비 89.9% 수준임.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상)	
						본예산	추경
법정자본금	300,000						
납입자본금	207,657	218,865	231,516	239,266	263,166	269,788 (272,288)	272,788 (277,288)
한도소진률	69.2	73.0	77.2	79.8	87.7	89.9 (90.8)	90.9 (92.4)

주: 괄호 안은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의 현금출자액만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나타냄.

□ 금번 추경으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3,000억원²⁾의 현금이 추가로 출자되면,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90.9%로 높아지며, 정부가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현금출자액과 동일한 규모의 현물(총 4,500억원)을 출자할 경우를 반영하면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9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1,000억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2,000억원 추가 편성

□ 이 경우에도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자본금 한도 여력이 있으나, 환율 상승³⁾, 한국산업은행 관계회사⁴⁾의 주가 하락⁵⁾, 신규 대출프로그램 실행⁶⁾ 등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2024년말, 13.9%)⁷⁾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⁸⁾ 법정자본금의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상향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음.

<법정자본금 한도 관련 개정안 비교>

현행	김태년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윤한홍 의원안
30조원	40조원	50조원	60조원

3) 환율 상승으로 외화대출의 원화평가액이 증가하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여 BIS 비율 하락 등

4)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

5) 관계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로 자기자본 감소하여 BIS 비율 하락 등 (HMM 주가 하락, 한국전력 적자 등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 BIS 비율이 하락한 바 있음)

6) 추경 3,000억원 현금출자(BIS비율 +9bp)를 통해 신규 대출프로그램 7.4조원(반도체 프로그램 3.4조원 증액, 관세대응 프로그램 4조원) 조성(BIS비율 △22bp) 시 BIS비율 △13bp 하락이 예상되어, BIS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현물출자 약 6,500억원 필요

* 저리대출 지원 관련 손실 미반영, 2024년말 BIS비율 민감도 기준 검토

【 추경 프로그램 조성에 따른 산은 BIS비율 영향 검토 】

구분	대출	현금출자	현물출자
금액[A]	7.4조원	0.3조원	0.65조원
BIS민감도(1조원당)[B]	△3bp	+30bp	+20bp
BIS비율[A×B]	△22bp	+9bp	+13bp

7) BIS 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자기자본: 은행의 순자산(주주자본+유보금 등)

-위험가중자산: 대출·투자 자산을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값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BIS 비율 최소 10% 이상을 요구하며, 12~15%를 우량한 수준으로 봄. 주요 시중은행은 대체로 15%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8)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 개선을 위해서 2022년 5,650억원, 2023년 4,350억원, 2024년 2조원의 현물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가 이루어진 바 있음.

2.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신규)⁹⁾

1)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과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	-	100,000	100,000 (자료: 금융위원회)	순증

- 국가별 기술경쟁 심화 및 내수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 주력 수출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¹⁰⁾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관세피해가 예상되는 주력산업(반도체 제외) 등 주요 업종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도체설비투자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같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는 것임.

9)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4)

10) 장한익, 「미 보편관세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 2. 김정현, 김현석, 박성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4. 12. 26.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추경으로 한국산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하여 총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할 계획임¹¹⁾.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반도체 외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② 관세피해 제조업의 운영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 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은 반도체설비투자와 동일하게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고, ② 관세피해업종에 대한 운영자금은 조달금리를 고려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할 수 있는 최저금리에서 추가 인하한 금리로 지원할 계획임.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개요>

구분	반도체 외 첨단산업지원	관세피해업종 지원
대상 산업	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AI 등 첨단전략산업	관세피해 제조업 전반
용도	설비투자자금 (신규설비투자 및 R&D 투자)	운영자금
지원규모	1조원	3조원
금리 수준	최저 국고채 수준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최저금리 - @
대출 만기	15년 이내	1년 이내
추경안	500억원 현금 출자 (500억원 현물 출자 협의중)	500억원 현금 출자

(자료: 금융위원회)

11) 2025년 이후의 운용 여부 및 규모는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 검토될 예정임.

2) 검토의견

□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의 감소, 수익성 악화 등의 경영상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기업 등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을 포함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세 인상의 수출 감소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정 기간 조정을 거쳐 안정화되므로¹²⁾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우량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차단하여 관세 인상으로 인한 위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대한 차별·제한 없이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사실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대미 수출 영향은 기업규모별, 세부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¹³⁾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체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관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해 관세 인상의 수출감소 충격이 대기업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¹⁴⁾. 또

12) 다만, 관세 인상 조치가 반복되거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과 시장의 투자·고용·생산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출 감소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

13) 장한익, 「미 보편관세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 2.

한, 산업별로 볼 때, 관세 인상으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하나, 전지, 철도, 석유정제, 시멘트, 주조 등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되는 타 수출국 대비 상대가격의 우위로 인해 대체효과 등이 나타나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분석됨¹⁵⁾.

- 따라서 관세 인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산업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세부사업인 ‘한국수출입은행출자(금융시장 안정화)’¹⁶⁾의 경우, 추경으로 2,000억을 증액하여 10조원 규모의 수출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데, 위기대응지원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각각 3조원을 지원하고, 상생지원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 대기업에 납품 또는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3조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14) 관세율 1%p 인상시, 대미수출액은 대기업의 경우 0.36%p, 중소기업의 경우 0.50%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생산라인과 다각화된 공급망으로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체 시장 발굴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장한익, 「미 보편관세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 2.)

15) 장한익, 「미 보편관세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5. 2.

16) 국가전략산업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금융 지원, 대규모 해외수주산업 지원 등을 위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임. 2025년 본예산은 1,000억원이며, 추경안에는 2,000억원 증액된 3,000억원이 편성됨.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개요(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출자)〉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위기대응지원	중소·중견기업	3조원
	대기업	3조원
대·중소기업 상생지원	해외 진출 대기업에 납품 또는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 등	3조원
수출다변화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다변화 추진 기업 등	1조원
합 계		10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 둘째,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사실이 입증된 기업’의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고, 방만한 대출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조속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경으로 반영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¹⁷⁾

1)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00억원(80.0%) 증가한 4,5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	250,000	450,000	200,000 (자료: 금융위원회)	80.0

-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024. 5. 23.) 및 추진방안(2024. 6. 26.)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대출프로그램(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3년간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규모의 정부출자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을

17)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2)

확충하여 국내에 신규투자하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17조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방안임.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요>

(운용 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운용 기간) 2025년 ~ 2027년(3년)

* 2024.7월부터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중

(지원 규모)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 2027년	합계	
	본예산	추경		당초	추경포함
운용규모	42,500	76,500	127,500	170,000	204,000
현금출자	2,500	4,500	7,500	10,000	12,000

* 현금출자와 동일한 규모의 현물출자 예정

(지원 대상) 국내에 신규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

(자금 용도) 설비, 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 지원,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지원

(대출한도) 현행「한국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후순위채 등 보완자본)×25%

(금리 조건) 국고채+가산금리(이용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 등에 따라 산업은행 조달금리 이하인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 가능)

*일반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주: 기존 프로그램에 개요에 추경으로 인한 운용규모 및 현금출자 변경액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2,500억원이 신규로 편성¹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은행은 총 4조 2,5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8) 현금출자 외에 동일한 규모의 현물출자도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2025년도 추경안에 따라 2,000억원이 추가로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출자 되면, 한국산업은행은 증자된 자본으로 반도체기업에 3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 총 7조 6,5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제공할 계획임.

○ 정부는 대출프로그램 확대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 하락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추가로 2,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실시할 예정임.

2) 검토의견

□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에 공급하기로 한 대출프로그램의 한도가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적인 대출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 2025년 당초 공급예정액 4조 2,500억원 중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기업에 투입하기로 한 6,250억원¹⁹⁾을 제외한 3조 6,250억원 중 4월 8일 현재, 약 3조 2,000억원 규모가 한도확인²⁰⁾되어 당초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출프로그램 규모만으로는 추가적인 대출 승인이 어려운 상황임.

○ 한도확인 후 대체로 2개월 이내에 대출승인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19) 정부는 2024. 8. 28. 산업경제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중 14.7%를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기업에 우선하여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공급예정액 4조 2,500억원 중 14.7%에 해당하는 6,250억원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기업에 지원하는 용도로 우선 할당함.

20) 기업에서 대출을 활용하겠다고 은행에 의사표시한 경우, 미리 한도를 잡아둠.

하면 현재 조성액은 7월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반도체설비투자 저리대출프로그램에 비해 금리가 1%p이상 높은 한국산업은행의 기본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함.

- 따라서 한도확인을 통해 예측되는 수요와 이로 인한 자금 소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해 자금지원 규모를 신속하게 확대하여 대응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는 2025년 자금 공급 규모 계획시, 한국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2024년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재원변경(대환대출) 수요로 인해 1차년도 자금 공급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2025년도 예산 편성 전 반도체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저리대출 프로그램(2조원)을 2024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24개 기업에 총 1조 310억원을 지원하였음²¹⁾.

- 자체 재원 대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 출자로 추진된 대출프로그램(‘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²²⁾하도록 하여, 기업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있음. 4월 8일 현재, 2,725억원은 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7,585억원은 자체 재원 대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21) 자체재원 프로그램 실시 기간: 2024. 7. 1. ~ 2025. 1. 23.

22) 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의 금리가 자체재원 대출프로그램의 금리에 비해 낮음.

<자체재원 대출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총 지원 실적	자체재원 유지	
		자체재원 유지	재원 변경
지원액	10,310	7,585	2,725
기업수	24	12	12

○ 대출 프로그램의 재원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의 금리가 자체재원 대출프로그램의 금리에 비해 낮아 자체재원 대출프로그램 이용 기업이 대부분 재원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대출 공급액 3조 6,250억원 중 약 1조 310억은 2024년 대출상품의 재원변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 당초 예산에 따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규모는 약 2조 5,940억원²³⁾ 수준이었던 것임.

□ 한편, 2025년도 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4월 8일 현재까지 4,795억원을 실행하였음. 그러나 이 중 2,725억원은 재원변경에 사용되었고, 2025년 예산으로 추진한 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신규로 실행된 대출은 2,070억원에 불과함.

23) 4.25조원(총 공급액)-0.625조원(AI컴퓨팅인프라)-1.03조원(2024대환대출 소요액)=2.595조원

<2025년 정부출자 대출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총 지원 실적		
		신규 대출	재원 변경
지원액	4,795	2,070	2,725
기업수	15 ^{주1)}	4	12

주: 1개 기업이 재원변경과 신규대출을 모두 받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을 이유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예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출프로그램의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신규)²⁴⁾

1) 사업 및 추정안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미국 관세 정책 피해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 재정을 출자해 모펀드 구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안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추정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5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자본과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²⁵⁾ 동 펀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1호~5호) 조성되었음.

- 모펀드 구성을 위해 출자된 국가 재정은 2020년도에 750억원, 2021년도에 675억원, 2024년도에 500억원임²⁶⁾.

24)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2432-304)

25) 정부는 2017년 12월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26) 모펀드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비율

(단위: 억원, %)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5호 주요 특징>

구 분	1호(2018년)	2호(2020년)	3호(2021년)	4호(2023년)	제5호(2024년)
재정출자	—	750억원	675억원	—	500억원
운용주체	한국성장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위주(대기업 포함)			
특징	조선, 건설중장비, 철강 분야 등 전통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기업의 차입수요에 대응하여 투자 방식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증가 대비	다양한 업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주력 산업 인센티브 삭제	금리·물가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에 따른 구조조정 수요 대비

(자료: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임.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²⁷⁾은 사전적 ·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인데, 이는 부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구 분		국가재정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KAMCO	국민	농협	하나	우리	신한	키움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합계
제1호	약정총액	—	1,502	1,102	646	250	350	350	350	350	350	—	40	125	5,415
	(비중)	—	(27.7)	(20.4)	(11.9)	(4.6)	(6.5)	(6.5)	(6.5)	(6.5)	(6.5)	—	(0.7)	(2.3)	(100.0)
제2호	약정총액	750	1,502	1,062	686	1,000	—	—	—	—	—	—	15	—	5,015
	(비중)	(15.0)	(30.0)	(21.2)	(13.7)	(19.9)	—	—	—	—	—	—	(0.3)	—	(100.0)
제3호	약정총액	675	1,322	935	668	600	—	—	—	—	200	100	10	—	4,510
	(비중)	(15.0)	(29.3)	(20.7)	(14.8)	(13.3)	—	—	—	—	(4.4)	(2.2)	(0.2)	—	(100.0)
제4호	약정총액	—	1,495	1,110	835	1,560	—	—	—	—	—	—	—	—	5,000
	(비중)	—	(29.9)	(22.2)	(16.7)	(31.2)	—	—	—	—	—	—	—	—	(100.0)
제5호	약정총액	500	1,335	991	824	1,350	—	—	—	—	—	—	—	—	5,000
	(비중)	(10.0)	(26.7)	(19.8)	(16.5)	(27.0)	—	—	—	—	—	—	—	—	(100.0)

27)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은 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② 운용 효율성이나 민간자금 유입 등 시장성 확보를 위해 일부 허용되는 일반 투자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은 60%이며,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에는 100%임.

사전적 구조조정기업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기업 ²⁸⁾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대상기업 ²⁹⁾ ③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의 지원대상기업 ³⁰⁾ ④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⑤ 코로나19 피해 기업 ³¹⁾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④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① 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4~5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② 운영사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정한 후 민간 투자자가 출자 여부를 정해 단건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즉시 소진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됨.

○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기간은 일반적으로 4~5년이며, 그 운용기간은 8~10년인데 반해, 수시 제안접수 방식의 프로젝트 펀드는 통상 1~3개월의 투자기간과 4~5년의 운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28)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9) 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기업, 최근 2년간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27제3항)

30)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으로서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 업체

□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제1호~제5호 펀드 외에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제6호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① 국가 재정(5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³²⁾의 정책자금(2,000억원)으로 모펀드(2,500억원)를 조성하고, ② 민간자금의 매칭출자를 통해 자펀드(5,000억원)를 결성함으로써 ③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려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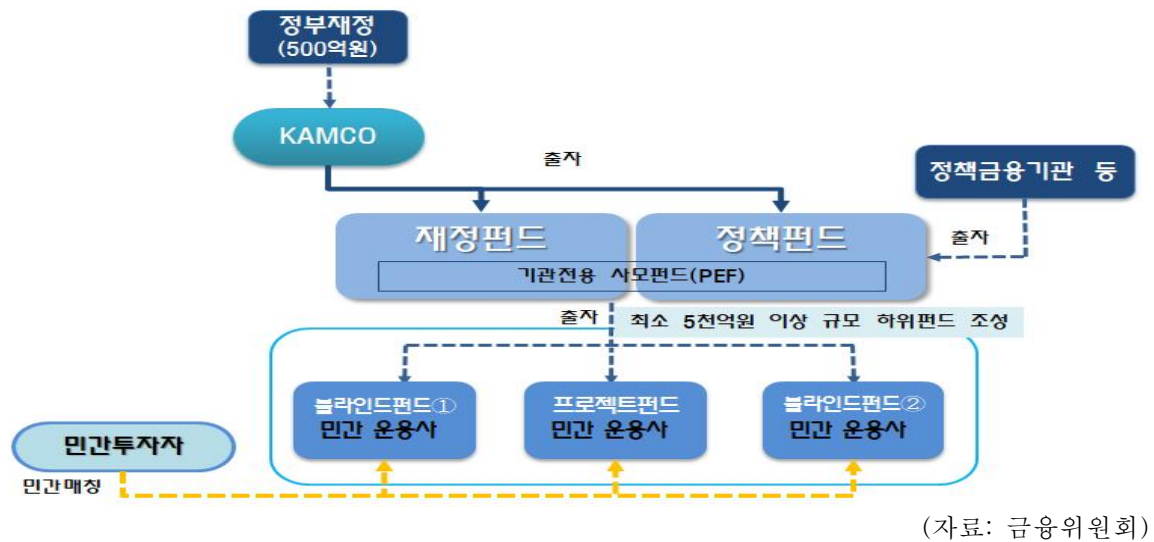
<기업구조혁신펀드 제6호의 조성 및 운영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공공자금(모펀드)			민간자금	총 자펀드 결성규모
	재정	정책금융기 관	계		
계 획 액 (비 중)	500 (10%)	2,000 (40%)	2,500 (50%)	2,500 (50%)	5,000 (100%)

(자료: 금융위원회)

3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가 재정 출자금 500억원을 제6호 펀드에 전액 후순위³³⁾로 출자하여 그 후순위 비율을 10%³⁴⁾로 할 예정인데, 이는 기 조성 펀드의 재정 후순위 비율 약 5~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자 수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2025년 내에 모펀드 및 자펀드의 선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계획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6호 집행계획안>

2025년 3~4분기	■ 재정·정책 모펀드 정관 체결 및 설립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선정공고 및 심사
	■ 자펀드(프로젝트펀드) 수시 출자 제안 접수 및 심사
2026년~	■ 선정 자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거쳐 투자집행 재사표: 금융위원회)

33) 후순위 자금은 투자금 상환 시 가장 마지막 순위로 상환받게 되고, 펀드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순위 출자자 → 중순위 출자자 → 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부담함.

34) 후순위 비율 10%를 위해 총 자펀드 결성규모(5천억원)의 10%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

2) 검토의견

(1) 기존 펀드와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제5호의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기준 총 2조 4,94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4조 8,942억원의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총 7조 3,882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고, 이 자펀드 결성액 중 총 4조 9,338억원이 투자 집행되어 그 집행률은 66.7% 수준임.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5호 결성 및 집행 현황〉

(2025년 3월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결성 현황			집행 현황	
구분	재정출자	펀드구분	모펀드총액	민간자금	자펀드결성(A)	투자실적(B)	집행률(B/A)
1호 (2018년~)	-	소 계	5,415	11,026	16,441	15,995	97.3%
		프로젝트	1,415	4,798	6,213	6,213	100.0%
		블라인드	4,000	6,228	10,228	9,782	95.6%
2호 (2020년~)	750	소 계	5,015	10,836	15,851	15,080	95.1%
		프로젝트	2,006	6,875	8,881	8,881	100.0%
		블라인드	3,009	3,961	6,970	6,199	88.9%
3호 (2021년~)	675	소 계	4,510	13,283	17,793	15,722	88.4%
		프로젝트	1,510	8,770	10,280	10,280	100.0%
		블라인드	3,000	4,513	7,513	5,442	72.4%
4호 (2023년~)	-	소 계	5,000	6,160	11,160	2,501	22.4%
		프로젝트	2,200	2,800	5,000*	1,142	22.8%
		블라인드	2,800	3,360	6,160	1,359	22.1%
5호 (2024년~)	500	소 계	5,000	7,637	12,637	40	0.3%
		프로젝트	1,650	1,850	3,500*	-	-
		블라인드	3,350	5,787	9,137	40	0.4%
합계	1,925		24,940	48,942	73,882	49,338	66.7%

* 프로젝트 펀드는 수시 제안접수 방식이므로, 자펀드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제4호 및 제5호 프로젝트 펀드의 민간자금 및 자펀드 결성액은 최소목표조성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동 펀드의 일반적인 투자기간³⁵⁾을 고려할 때, 현재 투자 여력이 있는 제3호~제5호 펀드의 투자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기준 총 자펀드 결성액 4조 1,590억원 중 1조 8,263억원이 투자 집행되어 총 2조 3,327억원(미투자율 56.1%)의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3호~제5호 투자 집행현황〉

(2025년 3월 기준, 단위: 억원)

모펀드 (결성시기)	자펀드결성액 (A)	자펀드(블라인드) 결성시기	투자액 (B)	미투자액 (A-B)	미투자율
3호 (2021년 6월)	17,793	2021. 12.	15,722	2,071	11.6%
4호 (2023년 6월)	11,160*	2023. 12.	2,501	8,659	77.6%
5호 (2024년 7월)	12,637*	2024. 12.	40	12,597	99.7%
합 계	41,590	—	18,263	23,327	56.1%

* 제4호 및 제5호 펀드의 자펀드 결성액: 제4호 및 제5호 펀드 중 프로젝트 펀드는 아직 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시 제안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최소결성목표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연도별 투자 집행액 현황을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연간 투자 집행액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아니하고, 연평균 투자 집행액은 8,160억원으로 나타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연도별 투자 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2018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평균
5,562	7,005	10,885	13,703	4,756	7,047	48,958	8,160

(자료: 금융위원회)

35)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자펀드 결성일로부터 4~5년간 투자 집행이 이루어짐.

□ 이렇게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6호 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① 기 조성 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대상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구조³⁶⁾이므로 미국 관세정책 피해 주력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② 신규로 펀드를 조성하는데 8개월 이상이 소요³⁷⁾되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설할 제6호 펀드의 주력산업 군으로 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반도체 등을 잠정 고려하고 있고, 프로젝트 펀드에 배분되는 재원 전액을 이 주력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블라인드 펀드에도 주력산업 전용펀드를 신설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런데, 제1호~제5호 펀드의 2025년 3월 기준 피투자기업 현황을 보면, 조선·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 집행액이 전체 투자 집행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이 펀드 투자에서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신설될 제6호 펀드의 중점 투자대상인 주력산업(자동차, 철강 등)과 기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36) 제5호 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에 따르면,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프로젝트 펀드는 100%,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에는 60% 이상 의무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력산업 투자와 관련된 의무투자 비율이나 인센티브 등의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37) 재정 출자가 이루어진 제3호 및 제5호 펀드의 경우, 모펀드 조성은 6, 7월경에, 자펀드 결성은 12월에 이루어져 재정 출자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5호 피투자기업 현황〉

- 총 149개 기업에 대해 4.9조원 투자(2025년 3월기준 누적)
 - (제조업) 조선·자동차부품·철강 등 86개 기업(57.7%), **2.9조원(58.6%) 투자**
 - (가공업 등) 식품·의류·의약품 15개 기업(10.1%), 0.2조원(4.2%) 투자
 - (항공·해운) 항공·해운·화물운송 11개 기업(7.4%), 0.4조원(8.0%) 투자
 - (도·소매 등) 도·소매, 전자상거래 10개 기업(6.7%), 0.3조원(6.3%) 투자
 -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출판업 등 27개 기업(17.6%), 1.1조원(22.9%) 투자

〈신설 제6호 펀드의 주력산업(잠정)〉

- 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자료: 금융위원회)

□ 기 조성 펀드의 투자 재원이 일정 부분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과 유사한 업종이 제6호 펀드의 중점 투자대상에 포함될 경우, 그 투자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임.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점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장성이 없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관리·성과 보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자가 시장에 새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정책 피해 업종을 고려하
되 기존 펀드 운영상 투자 수요가 적었던 업종을 중점 투자대상에 포
합하고, 민간투자자가 시장에 새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기존 펀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자펀드 운용 결과 회수된 재원의 재투자 방안 검토 필요

□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제2호 및 제3호 펀드 중 일부 자펀드의 청산 및
투자금 회수로 인해 2025년 3월 기준 총 257억원의 정부지분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정부지분수익은 현재 모펀드에 전액 유보되어 있는 상
황임.

〈 재정 출자에 따른 정부지분수익 〉

(2025년 3월 기준)

구 분	제2호 펀드	제3호 펀드	합 계
재정 출자금액	750억원	675억원	1,425억원
정부지분수익	121억원	136억원	257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해 추가 출자를 요구하려는 경우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
안, 자펀드 청산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한 자금활용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청산 및 투자금 회수로 생긴 회수금(정부지분수익)을 국고에 반환하고 있지 않고, 이 재원을 기업구조혁신펀드 신설을 위해 재투자한 사례도 없음.

현재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는 이 회수금을 안정형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자펀드 운용 결과 발생한 회수금의 재투자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주체가 한국성장금융(제1호~제3호펀드 운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제4호~제5호펀드 운용)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국성장금융이 운용 중인 제2호 및 제3호 펀드의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는 회수금을 기업구조혁신펀드 신설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모펀드로 이관하기 위한 예산·회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국가 재정 부담이 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모펀드 청산 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펀드 운용 결과 발생한 회수금을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해 두는 것은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는 회수금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³⁸⁾

1)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 햇살론15 보증을 거절당한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65억원(65%) 증가한 925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56,000	92,500	36,50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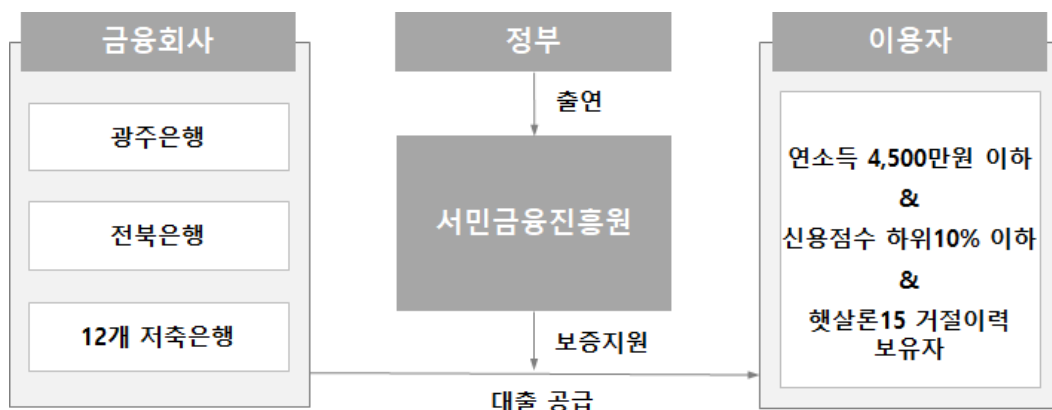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이로써 불법사금융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38)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³⁹⁾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⁴⁰⁾이 거절된 자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금리는 최초 15.9%이고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인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최종금리가 9.8%~9.9% 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설계되었음.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진흥원 심사 결과 보증이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집행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진흥원의 보증⁴¹⁾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가

39) KCB와 NICE 중 더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40) 햇살론15 기본 이용요건: ①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41) 보증비율: 100%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후 차주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2년 ¹⁾	2023년	2024년	2025년(3월말)
예산편성액 (집행액)	480 (200 ²⁾)	280 (560 ³⁾)	560 (560)	560 (560)
대위변제액	0.1	575	1,039	215
지원인원	34,208	112,009	70,636	22,989
편성 당시 보증공급 목표	2,400	1,400	2,800	1,700
보증공급액	1,002	2,924	1,935	795

주1) 2022년 9월 보증 공급 첫 실시
 주2) 2022년도 보증공급액이 1,002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 및 준비금 총 200억원만 집행
 주3)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집행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동 사업 예산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안 560억원 대비 370억원 증액한 930억원으로 증액의결⁴²⁾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증액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정부원안을 확정하였음.

2) 검토의견

(1) 사업손실을 추계방식의 정확성 제고 필요성

□ 2025년도 본예산에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을 위해 총 560억원이

42) 정무위원회 수정이유: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급목표를 담보할 수 있도록 37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연간 총 1,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편성 산식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 편성 산식>

560억원(보증재원) = 1,700억원(보증공급액)×33%(사업손실률*)×100%(보증비율)

* 사업손실률(예상) = 대위변제율 - 구상채권회수율 - 보증료 수입 + 사업운영비

(자료: 금융위원회)

- 이번 추경안은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신용자의 자금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례보증 공급액을 기존 1,7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경에서 새로이 설정한 보증공급액 2,800억원은 지난 2024년도에 설정한 보증공급 목표⁴³⁾와 동일한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자 설정된 목표임.
- 금융위원회는 신규 목표 보증공급액 2,800억원에 본예산 편성 당시와 동일한 사업손실률(33%)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재원은 기존 560억원에서 총 365억원 증액된 925억원 규모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출연금 추경안 편성 산식>

925억원(보증재원) = 2,800억원(보증공급액)×33%(사업손실률)×100%(보증비율)

(자료: 금융위원회)

<(예상)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사업손실률 = 대위변제율 - 구상채권회수율 - 보증료수입률 + 사업운영비율

- (~2024년) 사업손실률 20% = 대위변제율 40% - 구상채권회수율 10% - 보증료수입률 12% + 사업운영비율 3%
- (2025년~) 사업손실률 33% = 대위변제율 53% - 구상채권회수율 11% - 보증료수입률 12% + 사업운영비율 3%

(자료: 금융위원회)

43) 실제 보증공급액: 1,935억원

〈사업손실을 산출 근거 변경 내역〉

구 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변경 전(~2024년)	변경 후(2025년~)
❶ 대위변제율 (+)	40%	53.5%
❷ 구상채권회수율 (-)	9.6%	11.1%
❸ 보증료수입률 (-)	12.8%	12.4%
❹ 운영비율 (+)	3.0%	3.0%
❺ 사업손실률	20.6% ¹⁾	33.0%

❶ 대위변제금액 / 보증공급액

❷ 구상채권회수금액 / 보증공급액

❸ 조기상환비율, 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

❹ 운영비는 공급액의 3%로 추정: 운영비율 1.2% × 5년 × 0.5(평균)

주1) 사업손실률은 약 20.6%로 추정하였으나 출연금 예산 편성 시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고 20%만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경안에서의 사업손실률을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와 동일하게 33%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래 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 손실률 추계 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손실률 구성항목은 대위변제율(+), 구상채권회수율(-), 보증료수입률(-) 및 운영비율(+))인데, 금융위원회 및 진흥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각 구성항목은 보증공급에 따른 연차 별 수치를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한 값임.

○ 2022년도 사업 첫 출시 이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까지는 실데이터가 아닌 추정값을 활용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2022년~2023년도 공급액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재추정값을 활용하였음.

<사업손실을 추정 근거>

(단위 : %)

보증공급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후	합계
대위 변제율 (A) ¹⁾	출시당시	17.9	13.2	5.7	2.2	1.0	-	-	-	-	-	40.0
	재추정	23.9	17.6	7.6	3.0	1.3	-	-	-	-	-	53.4
	실제*	22.5	19.7									
회수율 (B) ²⁾	출시당시	2.99	3.75	3.9	2.32	3.25	2.66	1.72	1.33	1.12	0.97	24.0
	재추정	2.57	3.22	3.35	1.99	2.79	2.28	1.48	1.14	0.96	0.83	20.6
	실제*	3.7	3.1									
보증료 수입률 (C) ³⁾	출시당시	7.2	3.5	1.4	0.5	0.1	-	-	-	-	-	12.8
	재추정	7.0	3.4	1.4	0.5	0.1	-	-	-	-	-	12.4
	실제*	7.8	3.8									
운영 비율 (D)	출시당시	0.6	0.6	0.6	0.6	0.6	-	-	-	-	-	3.0
	재추정	0.6	0.6	0.6	0.6	0.6	-	-	-	-	-	3.0
	실제	0.6	0.6	0.6	0.6	0.6	-	-	-	-	-	3.0

주1) 대위변제율(A) = 대위변제금액 / 보증공급액

주2) 회수율(B) = 회수금액 / 대위변제금액

※ 사업손실을 계산 시에는 (회수율 * 대위변제율 = 회수금액 / 보증공급액 = '구상채권회수율' 값 사용

주3) 보증료수입률 = 보증료수입 / 보증공급액

* 2022~2023년 보증공급액 기준 1, 2년차 실 데이터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 매해 보증공급 규모가 일정하고, 사업 개시 이후 사업손실을 추정 근거의 대상이 되는 기간(5년)이 경과⁴⁴⁾한 후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평균 사업손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연도별 보증공급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고⁴⁵⁾, 다년도에 걸친 보증공급사업의 특성상 공급연차별로 상이한 보증리스크가 예상되며, 아직 보증공급 5년차에 접어드는 대출 건이 발생하기 이전임.

44)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첫 해 보증공급액에 대한 5년차 대위변제액, 5년차 회수액, 5년차 보증료수입액이 당해연도의 실제 사업손실 규모에 반영됨

45) 2022년 1,002억원 → 2023년 2,924억원 → 2024년 1,935억원 → 2025년 2,800억원(목표)

○ 따라서 예산안 편성 시에는 2025년도 공급예정인 보증 규모에 대하여 단일한 대위변제율, 구상채권회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보다는, 각 연도별 보증공급액 중 2025년도에 대위변제가 예상되는 규모, 2025년도에 (이미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구상채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⁴⁶⁾하여 산출 및 합산하는 등의 방안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금융위원회 및 진흥원은 소요예산 추계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업손실률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와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간 공급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차주의 성실상환 유인 강화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면서 연체경험 등을 사유로 햇살론¹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바,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낮기에 대출 실행 이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해당 차주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다중채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연체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고 구상채권 회수도 어려운 실정임.

46) 공급연도별 실제 보증공급액에 2025년도가 해당하는 각 연차에 예상되는 대위변제율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등 현황>

(단위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로자햇살론 ¹⁾ (2016년~)	순대위변제율 ³⁾	10.4	12.1	12.7
	회수율 ⁴⁾	20.9	20.7	22.3
햇살론15(17) ²⁾ (2019년 9월~)	순대위변제율	15.5	21.3	25.5
	회수율	6.6	7.7	9.6
햇살론유스 (2020년 1월~)	순대위변제율	4.8	9.4	12.7
	회수율	5.0	5.3	7.2
햇살론뱅크 (2021년 7월~)	순대위변제율	1.1	8.4	16.8
	회수율	0.5	1.5	3.9
햇살론카드 (2021년 10월~)	순대위변제율	6.1	12.3	17.8
	회수율	2.8	4.7	6.9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022년 9월~)	순대위변제율	0.01	14.5	26.8
	회수율	-	0.7	2.8

주1) 근로자햇살론Ⅱ(2016년~현재 공급)

주2)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15(1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합산

주3)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주4) 회수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자료: 금융위원회)

○ 실제로 2024년도말 기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순대위변제율은 26.8%로 진흥원에서 취급하는 여타 보증상품에 비해 높으며, 구상채권회수율 역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한편 동 사업은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하되 정상상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를 매년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⁴⁷⁾.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성실상환 인센티브>

[대출기간 3년]	최초15.9% → 1년 성실상환12.9% → 2년 성실상환9.9%
[대출기간 5년]	최초15.9% → 1년 성실상환14.4% → 2년 성실상환12.9% → 3년 성실상환11.4% → 4년 성실상환9.9%

(자료: 금융위원회)

47) 과거 1년 누적 연체일수가 1일 미만인 경우 금리 인하

○ 또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⁴⁸⁾을 이수하였거나 고용노동부 주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⁴⁹⁾에 대하여는 금리를 0.1%p 추가 인하하고 있음.

□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은 차주의 비중이 13.7%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고, 이용자 중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규모가 약 2만명⁵⁰⁾으로 추산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에 대한 금리 혜택 적용사례 역시 2025년 3월 기준 총 16건에 불과하므로, 금융위원회 및 진흥원은 해당 인센티브 수준을 강화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상환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8) 서민금융진흥원 주관,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2025년 기준 60명)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유선으로 상담 지원

4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실업부조 사업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함.

50) 2023년 10,258명 이용, 2024년 9,547명 이용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현황>

(단위: 명)

상환기간	성실상환 금리인하	인원 수	비중
3년	인하	6,428	14.6%
3년	미인하	37,711	85.4%
소계		44,139	100.0%
5년	인하	15,084	13.3%
5년	미인하	98,057	86.7%
소계		113,141	100.0%
합계		21,512 (전체 157,280)	13.7%

주: 2022. 9. 1. ~ 2024. 3. 31. 기간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용자 기준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현황>

(단위: 건)

2024년	2025년 3월	합계
5	11	16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보증부 대출 지원 사업으로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 또는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수혜 제공 사업이 아니므로,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강화, 복지기관과의 협업 등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V. 대체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3건(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의료지원)을 증액 의결함.
-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을 증액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을 증액 의결하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VII. 찬반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수정 의결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수정 의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X.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사업 수행 시 자금 수요와 대출실행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보완하고, 반도체 분야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으므로 타 부처와 지원대상 중복 및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수행 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요건과 심사기준을 사전에 확정하되, 산업군별·기업규모별로 수출감소 영향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향후 통상환경과 피해 양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해 나간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투자 대상과 펀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종전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는 회수금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포함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대부업 채무조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최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초 금리 인하, 성실상환 차주 대상 금리 인하 인센티브 강화·제도 홍보 강화 등 상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취업지원 강화 등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시효중단조치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무담보 장기채권 소각 대상을 현실화하도록 한다.

※ 첨부 : 2025년도 제1회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5년도 제1회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 4.

I.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99,342	-	99,34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16,500	-	16,500
	합 계		115,842	-	115,842

II.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가. 국가보훈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보훈병원 진료 (2150-365)	392,296	-	-	457,596	65,300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 진료비’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653억원 증액	
2	위탁병원 진료 (2150-366)	249,113	-	-	281,455	32,342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임 ○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323억 4,2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3	제대군인의료지원 (2150-450)	2,365	-	-	4,065	1,700	○ 동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보철구를 지원하는 것임 ○ 매년 예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대군인 진료비 예산 17억원 증액	

나. 금융위원회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1831-881)	56,000	36,500	92,500	99,000	6,500	○ 동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햇살론15 거절이력 ** (산출근거) 925억원(보증재원) = 2,800억원(보증공급목표) x 33%(사업손실률) x 100%(보증비율) ○ 보증공급목표 상향(2,800억원→3,000억원)을 위한 65억원* 증액 * 990억원(필요 보증재원) = 3,000억원(보증공급규모) x 33% (사업손실률) x 100%(보증비율)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1831-884)	90,000	-	90,000	100,000	10,000	○ 동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내로 포용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 ①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or ②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최대 2,000만원, 금리 15.9% (성실상환 시 9.8~9.9%까지 인하) (산출근거) 900억원(보증재원) = 6,500억원(보증공급목표) x 13.7% (사업손실률) x 100%(보증비율) ○ 햇살론15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 100억원 증액	

Ⅲ. 정무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Ⅳ. 부대의견

가.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사업 수행 시 자금 수요와 대출실행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보완하고, 반도체 분야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으므로 타 부처와 지원대상 중복 및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수행 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요건과 심사기준을 사전에 확정하되, 산업군별·기업규모별로 수출감소 영향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향후 통상환경과 피해 양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해 나간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투자 대상과 펀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종전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는 회수금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적극 협의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포함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대부업 채무 조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최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초 금리 인하, 성실상환 차주 대상 금리 인하 인센티브 강화·제도 홍보 강화 등 상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취업지원 강화 등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시효중단조치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무담보 장기채권 소각 대상을 현실화하도록 한다.